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최용기, 윤종술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19년 5월 20일(월)
담 당	조민제	페 이 지	총 7매
제 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면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현장에서 투쟁하는 상설적인 투쟁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19년 5월 2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장애인 교육문제에 관련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4. 우리는 교육부 장관 만남을 통해 **(1)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분야의 ▲ 2020년 교육예산 확대 및 보장, ▲ 장기적인 장애인평생교육 계획 수립과 ▲ 평생교육법 개정**과 **(2) 2014. 10. 4.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권고한 교육분야의 내용을 상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통합교육 방향에 맞추어진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계획수립**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때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이 전체장애인의 55.2% (보건복지부, 2017)에 달하며, 국민 평생교육 참여율이 36.8%임에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02% (교육부, 2014)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한 점은 교육부가 진정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는지 반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6. 따라서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통합교육이 존재함에도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려' 한 것에 주목합니다. 교육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학국가보고서에 '장애 유형에 따른 전

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 고 보고한 것에 관하여 통합교육의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지 보다 특수학교를 통한 분리교육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5조 ②항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 시행’ 될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마련 및 법 개정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7. 우리는 이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만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통합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약속을 기대합니다.

[붙임] 유은혜 교육부장관 만남 자료

○ 일시 : 2019년 5월 21일 오후2시
○ 장소 :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9층 중회의실
○ 참여자 :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

<참고자료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교육(제24조)
45. 위원회는 통합교육이 존재함에도 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특수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일반 학교에 등록된 장애 학생이 그들의 장애로 인한 필요에 걸맞는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보고서에 우려를 표한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b) 통합교육을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학교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와 기타 교육 기관에서 보조공학과 교실 내 지원, 이용가능하고 적합한 교구 및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c) 일반 학교의 교사와 교직원을 포함하는 교육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참고자료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국가보고서

교육(제24조)
<쟁점목록 단락 26에 대한 답변>
149. 정부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서 언급하고 있는 포괄적 교육의 필요성에 동감하며, 포괄적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에,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자료 및 교재의 개발, 교사 및 교직원 대상 연수, 장애인식개선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장

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다(쟁점목록 25 답변 참조).

<참고자료3> 장애인평생교육 현황

(1)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 조사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중 교육부(2014)의 평생교육 통계 자료와 보건복지부(2017)가 시행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현황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예상해 볼 수 있음. 먼저 교육부(2014)의 평생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3분의 1(약 1천 7백만 명)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0.02%, 발달장애인은 0.01%만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표 1>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수 및 평생교육 참여율

구 분	전 체	장애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	3,768개	232개(6.2%)	-
학습자 수	17,618,495명	3,619명	1,724명
평생교육 참여율	100%	0.02%	0.01%

출처: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평균 0.2% ~ 1.5%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화 · 체육 · 예술 교육(1.5%)의 참여 빈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능력 향상 교육(0.8%), 인문교양교육(0.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0.5%), 학력보완교육(0.3%), 시민참여교육(0.2%)의 순으로 나타남.(<표 2> 참조).

<표 2> 주요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비율

단위: %

구 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0.2	0.5	0.4	0.3	0.3	0.0	0.7	0.3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0.6	0.0	0.6	0.5	0.7	3.6	0.7	0.5
직업능력향상교육	0.6	0.6	1.2	0.5	1.1	0.0	1.1	0.8
인문교양교육	0.7	0.1	1.6	0.6	0.0	0.0	0.0	0.7
문화・체육・예술교육	1.8	0.4	1.9	2.0	1.3	0.0	0.2	1.5
시민참여교육	0.1	0.2	0.2	0.2	0.0	0.0	0.0	0.2

출처: 김성희 외 (2018). 2017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은 장애인의 저조한 평생학습 참여율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이 확충

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김기룡, 나경은, 2015; 김두영, 김호연, 2016).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5년(2014 ~ 2018) 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운영 기관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프로그램 수 및 예산 액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표 3>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개, 백만원)

시·도	평생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계		
	기관수	프로그램수	예산	학교수	프로그램수	예산	센터수	프로그램수	예산	기관수	프로그램수	예산
2014	152	402	44	8	21	26	5	26	129	165	49	1,099
2015	160	516	1,141.7	13	38	89.5	5	14	91	178	68	1,322.2
2016	185	525	1,805.5	14	30	44.5	4	25	58	202	580	1,908
2017	194	571	1,312	10	40	38	5	18	67	209	629	1,417
2018	203	642	2,339.8	10	21	35.3	3	11	29.6	216	674	2,404.9

출처: 교육부 (2014 - 2018).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 · 도교육청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03개 평생교육기관, 10개 특수학교, 3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총 216개 기관에서 674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장애인 야학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5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8명의 장애성인에게 432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교육부, 2018)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3,768개에 달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178개로 전체의 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표 4> 참조)

<표 4>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시 설 구 분		기관 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수
총 계		3,768	178
학교 부설	유초중등학교 부설	10	18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포함)
	대학(원) 부설	403	160
원격 형태		887	
사업장 부설	유통업체 부설	320	
	산업체부설	37	
시민사회단체부설		495	
언론기관부설		494	
지식·인력개발형태		727	
평생학습관		395	

출처: 교육부 (2014). 평생교육통계. 자료 재구성.

김두영, 김호연(2016)이 2015년 평생교육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별 공급 현황을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전체 507개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53.1%), 그 다음으로 인문교양교육(25.4%), 직업능력향상교육(12.4%), 기초문해교육(4.7%), 학력보완교육(3.4%), 시민참여교육(1.0%) 순임.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영역에 따른 제공기관별 공급 패턴을 살펴본 결과, 평생학습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62.9%), 그 다음으로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20.9%), 사업장 부설기관(6.1%), 시민사회단체부설기관(4.1%), 지식인력개발형태기관(2.8%)의 순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볼 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확대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확충뿐 아니라 일반 평생교육기관 내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김두영, 김호연, 2016).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난 5년 동안 전체 특수교육 예산은 6,063억여 원, 전체 교육예산은 19조 415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은 28억여 원 증가에 그침.

<표 5> 지난 5년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및 전체 교육예산 비교

(단위: 백만 원)

	2014 (A)	2015	2016	2017	2018 (B)	B−A	연평균 증가액
장애인 평생교육예산 (C)	2,926	3,699	4,435	4,482	5,743.9	2,817.9	704.5
특수교육예산 (D)	2,153,125	2,227,638	2,376,062	2,653,497	2,759,503	606,378	151,594.5

전체 시도교육청 총 교육예산 (E)	49,986,533	50,325,564	51,225,455	57,003,830	69,028,073	19,041,540	4,760,385
전체 특수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D)×100	0.14%	0.17%	0.19%	0.17%	0.21%		
전체 교육 예산 중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비율 (C/E)×100	0.006%	0.007%	0.009%	0.008%	0.008%	-	-

출처: 교육부 (2014 - 2018). 연도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재구성

2018년 현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90,780명이고 이를 특수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30,398천원(연간)으로 산출되지만, 장애성인의 경우 등록 장애인 수 2,511,051명을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으로 나누면 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2,287원(연간)에 불과함.

이처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크게 성장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증진 및 평생교육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이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음.(김기룡, 2016).